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06
------------	-------

발의연월일 : 2017. 11. 16.

발의자 : 양승조 · 정춘숙 · 김정우

신창현 · 인재근 · 안호영

전혜숙 · 이용주 · 김해영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2월 2일 「약사법」 제91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되어 의료급여법의 내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급여법」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